

「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여 왔으나, 그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「농어촌정비법」에서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애매모호한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3조 조항이 2002.12.26. 삭제되고 관련 조항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(2002.12.26.)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조례명의 변경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근거 조항 및 기관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일부 용어 및 문맥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